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8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신동욱・김 건・조배숙

김소희 • 나경원 • 유용원

배준영 • 인요한 • 구자근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사전투표일"로 한다.

제44조의2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를 "사전투표일 후"로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이하 "사전투표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오후 8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을 "사전투표일"로, "오후 6시에"를 "오후 8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를 "오후 8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한다)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9시 30분에 닫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8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9시 30분"으로"로, "'오후 6시" 및 "오후 8시""을 "'오후 8시""로 한다.

제158조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중에"를 "사전투표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를 "사전투표마감 후"로 한다.

제162조제2항 중 "사전투표기간 중에는"을 "사전투표일에는"으로 한다.

제176조제4항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를 "오후 8시 후에"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을 "사전투표일"로 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오후 8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 6시까지"를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 6시 이후에"를 "오후 8시 이후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투표 및 투표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u>사전투</u>	사전투
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	표일
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게 청구할 수 있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
성) ① ~ ③ (생 략)	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4
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u>사전투표기간 종료 후</u> 중	<u>사전투표일 후</u>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 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	
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⑥ (생 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u>오후</u>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 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 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 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 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	 ⑤・⑥ (현행과 같음)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_	
	일 전 3일이 되는 날(o` 전투표일"이라 한다)	하	",	<u>사</u>
第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155條(投票時間) ①			
	<u>시에</u>			

- ② 사전투표소는 <u>사전투표기간</u>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달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는 選擧日 <u>오후 6시(보</u> <u>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u> <u>시)까지</u> 管轄區・市・郡選擧管 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단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

②사전투표일
오후
8시에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오후 8시까지</u>
 ⑥
6
<u>투표소 및</u>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

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 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 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생략)
-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 저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u>.</u>
⑦ (현행과 같음)
8
<u>"선거일 오후 8</u> 시"는 각
각 "선거일 오후 9시 30분"으
<u>로</u>
<u>"오후</u>
8시"
세158조(사전투표) ①

한다)은 누구든지 <u>사전투표기</u> <u>간 중에</u>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u>사전투표</u>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 2. (생략)
- ⑦·⑧ (생 략)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생략)
 -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u>에</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사전투표</u>	_
마감 후	
1. • 2.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현행	
과 같음)	
②	
사전투표일에는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사전투표일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 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 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 다) 서면 · 전자우편 또는 중앙

선생무료의 접구・개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오후 8시 후에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 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한다.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2.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법) ① (생 략)
 -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u>오후 6</u> 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 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 다.
 - ③ ④ (생 략)
-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저 (생 략)
 -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u>오후 6시(대</u> 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1. <u>사전투표일</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left(\frac{O}{I}\right)$
218조의16(재외선거의	
법) ① (현행과 같음)	, 0
	ዕጅ 0
②	
시까지	
③ • ④ (현행과 같음)	
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퓨) ①
(현행과 같음)	11 322 / 3
(137 EB)	
	 호 0 J
<u>오</u>	<u> </u>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 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 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 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 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 게 할 수 있다.
-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 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 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 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 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 한다.
- ⑤ ⑥ (생략)

③
<u>\$</u>
후 8시까지
4
<u>오후 8시 이후에</u>
,
⑤·⑥ (현행과 같음)